

【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97회 이사회 회의록 】

통지일자 : 2024년 3월 14일

1. 일 시: 2024년 3월 22일(금요일) 13:00
2. 회의장소: 경안고등학교 회의실
3. 참석이사: 이○○ 이사, 권○○ 이사, 이○○ 이사, 김○○ 이사, 장○○ 이사, 신○○ 이사
권○○ 이사, 강○○ 이사, 정○○ 이사, 김○○ 이사, 권○○ 이사
참석감사: 권○○ 감사, 양○○ 감사
불참이사: 권○○ 이사
4. 상정의안
안건 1. 제397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호선의 건
안건 2. 사무직원 신규 임용의 건
안건 3. 정관 개정의 건
안건 4. 교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
5. 개회선언: 이○○ 이사장이 성원 보고를 요청하니, 사무국장이 이사 12명 중 권○○ 이사 1명이 불참하고, 11명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하다.
이○○ 이사장: 이사 11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기에 지금부터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97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. (의사봉 3타)
6. 전 회의록 낭독
이○○ 이사장: 전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.
이○○ 이사: 제396회 이사회 회의록은 사전에 검토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,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.
권○○ 이사: 재청합니다.
이사 전원: 찬성합니다.
이○○ 이사장: 모든 이사님께서 찬성함으로 제396회 이사회 회의록은 원안 통과하였음을 선언합니다. (의사봉 3타)
7. 회순채택
이○○ 이사장: 회순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.
이○○ 이사장이 안건 1. 제397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호선의 건, 안건 2. 사무직원 신규 임용의 건, 안건 3. 정관 개정의 건, 안건 4. 교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설명한 후 회순채택을 요청하니, 이○○ 이사가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니, 권○○ 이사가 재청하고 이사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결의됨을 이○○ 이사장이 선포하다.(의사봉 3타)
- 안건 1. 제397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호선의 건**
이○○ 이사장: 제1안 제397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. (의사봉 3타)

이○○ 이사: 이번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도 권○○, 김○○, 장○○ 이사님이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추천하며, 동의합니다.

권○○ 이사: 재청합니다.

이사전원: 좋습니다.

이○○ 이사장: 제397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은 권○○, 김○○, 장○○ 이사님으로 결의됨을 선포하다. (의사봉 3타)

안건 2. 사무직원 신규 임용의 건

“ 생 략 ”

안건 3. 정관 개정의 건

이○○ 이사장: 정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. (의사봉 3타)

<김○○ 사무국장이 정관 개정의 건을 상세 설명하다.>

권○○ 이사: 신설 항목의 조문의 명칭을 ‘임원의 정년 및 자격’을 ‘임원의 자격 및 정년’으로 자격 기준을 정하고, 정년을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

신○○ 이사: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.

김○○ 이사: ‘임원의 정년은 만 70세로 학교 회계 연도 말까지 한다.’라는 조문의 해석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, 정확히 정리하고 정관 변경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.

장○○ 이사: 이 부분은 경안노회 규칙과는 조금 다르지만, 개정안의 목적이 정년을 70세로 정하자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고, 일반적으로 임원이 정년이 12월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적용되면, 임원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잔여 2개월이 생겨 임원 결원에 따른 2개월만 임기로 하는 후임 이사 선임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.

신설 개정안 ‘임원의 정년 및 자격’을 ‘임원의 자격 및 정년’으로 수정하고, 그에 따른 조문의 순서도 수정하고, ‘임원의 정년은 만70세로 학교 회계 연도 말까지 한다’를 ‘임원의 정년은 만70세로 한다. 단, 학교 회계 연도 말까지 한다.’로 수정안으로 동의합니다.

신○○ 이사: 재청합니다.

이○○ 이사장: 동의·재청이 있었습니다. 가하시면 “네” 하시고, 부하시면 “아니오” 하시기 바랍니다.

이사전원: (모두) 네!

이○○ 이사장: 정관 변경의 건은 제18조의2(개방이사의 정수)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. 제19조의 2(임원의 자격 및 정년) 1. 임원의 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경안노회 소속의 향존직이어야 한다. 2. 임원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. 단, 학교 회계 연도 말까지 한다. 부칙 13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로 수정하여 가결됨을 선포하다. (의사봉 3타)

안건 4. 교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

이○○ 이사장: 교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. (의사봉 3타)

<김○○ 사무국장이 교직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세 설명하다.>

권○○ 이사: 법인이사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김○○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위원으로 장

○○ 이사를 추천합니다.

김○○ 이사: 추천에 동의합니다.

강○○ 이사: 재청합니다.

이○○ 이사장: 동의·재청이 있었습니다. 가하시면 “네” 하시고, 부하시면 “아니오” 하시기 바랍니다.

이사전원: (모두) 네!

이○○ 이사장: 교원 징계위원회 법인이사 김○○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위원으로 장○○ 이사로 결정됨을 선포하다. (의사봉 3타)

이○○ 이사장: 기타 토의 사항이 없으면 폐회하기로 이○○ 이사 동의와 신○○ 이사 재청으로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97회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니 13시 45분이 되다. (의사봉 3타)

상기와 같이 결의하다.

2024. 3. 22.

학 교 법 인 경 안 학 원 이 사 회

이사장 이 ○ ○
이 사 신 ○ ○
이 사 김 ○ ○
이 사 장 ○ ○
이 사 권 ○ ○
이 사 김 ○ ○

이 사 이 ○ ○
이 사 권 ○ ○
이 사 권 ○ ○
이 사 정 ○ ○
이 사 강 ○ ○
이 사 권 ○ ○